

Vol. 5

2026.05.13

& Customs Trade News

HANJOO CERTIFIED CUSTOMS AGENCY

HANJOO

T. 02-2017-2125

F. 02-545-1682

W. http://www.hjcustoms.co.kr

통관 통합 운영사업부 안만복부대표 mbahn@hjcustoms.co.kr

통관 요건 물류사업부 박주경부대표 jpark@hjcustoms.co.kr

통관 요건 물류사업부 윤지현전임 jhyun@hjcustoms.co.kr

CONTENTS

Ⅰ. 법령 개정사항

Ⅱ. 입안 예고

Ⅲ. 조세심판사례

Ⅳ. 관세 및 FTA관련 동향

Ⅰ. 법령 개정사항

1.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집중관리품목의 신속한 국내 공급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 요건 및 수입신고 지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외국의 양허 철회·수정 등에 대한 정부의 대항조치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할당관세 추천·관리 제도 강화 및 집중관리품목 제도 신설	○ 할당관세 규정 내 “집중관리품목”(물품의 신속한 공급 등을 위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품목) 관련 규정 신설 (제 92 조) - 수량할당 추천 시 반출기한 등 신속공급 조건 부여 의무화 - 조건 위반 시 추천 취소 - 추천·추천취소 및 추천기관-세관 간 통보체계 마련 ○ 집중관리품목을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적용대상에 추가 (제 248 조) - 보세구역 반입일 등부터 30 일 이내 수입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항조치 절차 정비	○ 외국의 양허 철회·수정 등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항조치 절차 마련 (제 95 조의 2) - 보복관세 부과절차 등을 준용

(3) 시행일

‘26.04.03

Ⅰ. 법령 개정사항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기술의 발전과 시장환경의 변화를 전기용품의 안전관리에 반영하기 위해 제조기술 성숙도, 품질관리 수준 및 사후관리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서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변경함으로써 그 안전관리 수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안전관리 수준
조정 대상
품목 및 내용</td><td>[별표 4] 안전확인대상제품

1.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table>
<tr><th>분류</th><th>품목</th></tr>
<tr><td rowspan="5">사.
전기기기</td><td>42) 전기청소기</td></tr>
<tr><td>43)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td></tr>
<tr><td>44) 전자레인지(300MHz ~ 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td></tr>
<tr><td>45) 전기건조기(손, 발, 의류, 농산물, 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td></tr>
<tr><td>46) 화장실용 전기기기</td></tr>
</table>
*종전 [별표3]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서 변경됨.</td></tr>
</table>

(3) 시행일

’26.04.01

3.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 변동을 고려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92원에서 리터당 450원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37.5원에서 리터당 281원으로 인하폭을 각각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세율: 492 원 → 450 원/L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세율: 337.5 원 → 281 원/L

(3) 시행일

'26.04.01

Ⅰ. 법령 개정사항

4.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출국 취소 시 면세물품 회수, 신체검색 근거 명확화 및 주류 면세기준 개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소액물품(의약품 등)에 대한 자가사용 인정기준 준용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출국 취소 여행자의 물품처리 규정 신설 (제 56 조의 2)</td><td>○ 출국 취소 여행자의 출국시 신고내역 취소 등 물품처리 절차를 규정

○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면세품 회수 의무를 신설하고, 출국 취소 시 일부 면세품은 회수 대상에서 제외함.</td></tr>
<tr><td>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 내용을 반영 (제 15 조)</td><td>○ 검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법」 제 265 조제 2 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검색장비*를 고시에 반영
* 문형금속탐지기,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휴대용 금속탐지기, 마약 · 폭발물탐지기(이온스캐너), 신변이미지검색기 등</td></tr>
<tr><td>소액물품(의약품 등)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준용 (제 18 조)</td><td>○ 오 · 남용우려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중 해당 내용 준용

[별표 11] 자가사용 인정기준
<table>
<tr><th>종류</th><th>자가사용 인정기준</th><th>비고</th></tr>
<tr><td>의약품</td><td>총 6 병 (6 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 개월 복용량)</td><td>○ 면세통관범위의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 규제물품 성분 함유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 이거나 외포장상 성분 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 완제의약품
○ 건강기능식품이 6 병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td></tr>
</table>
</td></tr>
</table>

Ⅰ. 법령 개정사항

구분	내용
여행자 및 승무원 주류 면세기준 개선 (제 19 조, 제 42 조)	○ 술의 면세기준을 전체 용량 2 리터 이하(총 가격은 미화 400 달러 이하)로 개정하여, 종전 병수(2 병) 제한 폐지
인용 고시명 현행화 (제 47 조, 제 48 조, 제 52 조)	○ 폐지된「반송절차에 관한 고시」를 현재 시행중인「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로 인용 근거 정비
크루즈 일괄신고 관련 신고서 제출의무 정비 (제 13 조)	○ 국내 입항후 하선하는 거주자 또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귀국하는 비거주자도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관신고서(규칙 별지 제 43 호 서식) 작성 · 제출을 생략

(3) 시행일

'26.04.01

Ⅰ. 법령 개정사항

5. 「관세법 제 71 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석유화학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합병등기일 이후 사내 석유화학공정에서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여 발생한 주 · 부산물을 정유공정에 재사용하거나 비석유화학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 · 부산물의 제조에 사용된 원유에 대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나프타 원료 사용 주·부산물 제조용 원유를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	○ [별표 3] 2026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 (기존) 원유 - (개정) 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 10 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합병등기일 이후 사내 석유화학 공정에서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여 발생한 주 · 부산물을 정유공정에 재사용하거나 비석유 화학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주 · 부산물의 제조에 사용된 원유를 포함한다)

(3) 시행일

'26.04.03

6.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순환경제를 촉진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자원*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입 시 환경오염의 적정 처리를 담보하기 위해 부담하는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을 면제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입 신고 수리 취소 등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서식 중 작성 요령을 일부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순환자원: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있는 폐기물 중 환경 유해성이 없고, 유상 거래가 가능하며, 방치 우려가 없는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 또는 지정 · 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수출입관리폐기물 권한 위임 확대 (제 24 조)	○ 수출입 신고 수리 취소, 과징금 부과·징수, 청문 등의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
일부 서식 수정	○ 순환자원 수입 보증금·보험금 면제 (별표 4) ○ 수출입 신고서식 정비(별지 제 4 호 서식) ○ 폐기물 처리결과 미송부 시 과태료 기준 조정 (별지 제 7 호 서식)

(3) 시행일

’26.04.07

Ⅰ. 법령 개정사항

7.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자유무역지역 내 항공기·선박 MRO(정비·수리·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개선하고, 우수 제조업체에 대한 자율관리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코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항공기 · 선박 MRO(정비 · 수리 · 개조)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 MRO 항공기 및 부분품의 자유무역지역 반입승인시 반입절차 간소화(제 7 조의 4) ○ 항공기 · 선박 MRO(정비 · 수리 · 개조) 물량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 개조 · 수리 · 정비 물품도 원재료에 해당되도록 개선(제 31 조 1 호) ○ 항공기 · 선박 MRO(정비 · 수리 · 개조) 원활한 사용신고를 위해 개조 · 수리 · 정비도 제조업으로 분류([별표 1])
자유무역지역 우수 제조업체에 자율관리혜택 확대	○ 우수 제조업체에 대한 혜택 확대로 신속성 · 효율성 제고(제 7 조의 3)
기타 용어 및 서식 재정비	○ 법령 개정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코드 현행화 ○ 고시 폐지 및 통합으로 고시명칭 변경 반영 및 고시 내 법령 용어에 따른 명칭 통일 등

(3) 시행일

'26.04.06

Ⅰ. 법령 개정사항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법집행의 투명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종전에 지침으로 운영하던 재활용부과금의 면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를 면제하도록 정하는 한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분할납부 횟수를 연 4회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그 횟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재활용부과금 징수 예외 신설 (제 28 조의 4 조)	○ 재활용부과금이 1 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 면제 규정 신설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 완화 (제 12 조제 4 항)	○ 연 4 회로 제한하던 분할납부 횟수 제한 삭제 및 확대 가능하도록 개선

(3) 시행일

'26.04.21

Ⅰ. 법령 개정사항

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 10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던 분할납부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부담금의 금액기준을 삭제하고, 분할납부의 횟수를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 대상 확대 (제 7 조제 1 항)	○ 분할납부 가능 금액기준(100 만원 이상) 삭제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 횟수 확대 (제 7 조제 1 항·제 2 항)	○ 분할납부 횟수를 연 4 회 → 6 회로 확대 및 회차별 납부기한 규정

(3) 시행일

'26.04.21

Ⅱ. 입안예고

1.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입안 이유

최근 중동전쟁으로 물품을 선박으로 운송할 때 종전의 운송경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우회경로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이 상승하여 추가적 관세 부담이 발생하는바,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물품 운송경로 등이 변경되어 운임이 통상적 운임보다 현저히 증가할 경우 관세 과세가격 산정시 통상적 운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가적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수입물품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비상상황 운임 산정 기준 신설 (제 20 조 제 4 항 제 4 호)	○ 전쟁·천재지변 등으로 통상적인 운송경로·일정과 다르게 운송되는 물품에 대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 기준 적용 가능
통상 운임 기준 운영 근거 마련 (제 20 조제 4 항)	○ 통상 운임의 기준, 적용기한 등 세부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
과세운임 반영 범위 확대 (제 20 조제 6 항)	○ 기존 산출 운임·보험료 외에 제 4 항에 따른 통상 운임도 과세가격 산정에 반영 가능하도록 규정 정비

Ⅱ. 입안예고

2.「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 입안 이유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상표권 침해물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량화물 상표권 간이절차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담보해제 신청 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기한 기준을 통일하여 당사자의 계산 착오를 방지하고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소량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신설 (제 31 조~제 37 조)	○ 물품가격 미화 2,000 달러 이하 특송물품, 미화 1,000 달러 이하 우편물 등 간이절차 적용 대상 금액 및 물품 명시 ○ 적용 대상물품이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권리자 및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에게 각각 통보 ○ 상표권 침해의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 침해 또는 비침해 입증자료 제출 ○ 입증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10 일 이내 통관보류 여부 결정 ○ 입증자료 제출 시 담보제공 생략, 권리자 및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통보 방법 명시
담보해제 신청 시 관련 당사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기한 기준 변경 (제 30 조)	○ 손해배상청구 기한 계산 시「관세법」 제 8 조제 3 항 각 호의 날(공휴일 등)을 제외하여「관세법 시행령」제 239 조에 따른 통관보류 지속을 위한 소 제기 기한과 동일한 기준 적용

Ⅱ. 입안예고

3.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입안 이유

「관세법」 제 51 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태국산 섬유판」의 경우 2025 년 5 월 7 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았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덤핑방지관세 부과 물품</td><td>○ 태국산 섬유판 (HSK 4411.12-1000 호 외 9 품목)으로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것
1. 목재 또는 기타의 목질 재료로부터 섬유질을 분리. 추출한 후 접착제 등을 도포하여 판재(보드) 형태로 가공한 것
2. 두께 5mm 이하인 섬유판(Fibreboard of wood or other ligneous materials) 단, 기계적 가공 여부 표면 피복 여부 및 밀도 등은 관계없음</td></tr>
<tr><td>적용기간</td><td>○ 공포한 날(26.05.07)부터 5 년간 적용</td></tr>
<tr><td>덤핑방지관세율</td><td>○ 공급자에 따라 15.29%~22.44%
<table>
<tr><th>공급국</th><th>공급자(수출자, 생산자)</th><th>덤핑방지관세율(%)</th></tr>
<tr><td rowspan="3">태국</td><td>1. 피피엠(Panel Plus MDF Co., Ltd.)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td><td>20.24%</td></tr>
<tr><td>2. 어드밴스(Advance Fiber Co., Ltd.)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td><td>15.29%</td></tr>
<tr><td>3. 그 밖의 공급자</td><td>22.44%</td></tr>
</table></td></tr>
</table>

Ⅱ. 입안예고

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입안 이유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이 2026 년 3 월 31 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규정을 신설하고, 아랍에미리트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명칭을 '경제부'에서 '대외무역부'로 수정하는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한-UAE 협정 자율발급 원산지증명 방식 신설 (제 7 조제 2 항 제 18 호)	○ UAE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 작성·서명하는 원산지증명 방식 신설
한-UAE 협정 관련 기관명 현행화 (제 8 조제 14 항 제 1 호)	○ UAE 기관 명칭을 "경제부"에서 "대외무역부"로 변경
한-UAE 협정 원산지증명서 서식·기재사항 신설 (제 15 조제 23 항· 제 24 항 및 별표 20 의 6)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의 인정서류 및 기재사항 규정 신설

Ⅱ. 입안예고

5.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입안 이유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 932 호, 2022.9.5.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5 년 9 월 4 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 56 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 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덤핑방지관세 부과 물품	○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 (HSK 제 2909.43-0000 호 해당 물품)
적용기간	○ 시행일부터 5 년간 적용
덤핑방지관세율	○ 43.58%

Ⅱ. 입안예고

6.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입안 이유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 정식 서명('25.9.2.)됨에 따라 협정 대상국가인 에콰도르공화국을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관련 조문에 추가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에콰도르공화국'을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 및 잠정세이프가드조치 대상국가에 추가 (제 24 조 1 항)	○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수입이 급증하여 상대국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규정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완화 대상 국가'에 에콰도르공화국을 추가 (제 24 조 16 항)	○ 조치 기간이 1 년 이상일 경우, 경감 조치 의무화 국가 대상에 반영
'세이프가드조치의 재량적 적용 배제가 가능한 대상 국가'에 에콰도르공화국을 추가 (제 24 조의 2 1 항)	○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대해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상대국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26.04.14 ~ '26.05.26

Ⅱ. 입안예고

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입안 이유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정밀검사 횟수를 위해도에 따라 20 회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위해 우려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입식품 영업자가 종업원에게 실시해야 하는 위생교육 주기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 절차 간소화' (제 4 조)	○ 기존 영업등록 변경신청·변경신고를 한 경우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전자 확인 가능 시 위생교육 증빙서류 제출 생략 (제 21 조)	○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교육 이수증 등 제출을 면제하도록 개선함.
위해 우려 시 추가 검사 강화 근거 마련 (별표 9)	○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식약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대 20 회 범위 내 추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직접구매 해외식품 연구 목적 시험 예외 신설 (제 49 조의 5)	○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포함된 원료·성분의 시험방법 연구·조사 목적은 규제 대상 원료·성분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함.
위생교육 기준 완화 (별표 8)	○ 기존 "매 분기 위생교육" 의무를 "매년 1 시간 이상 위생교육"으로 완화함.

(3) 의견 제출

'26.04.20 ~ '26.06.01

Ⅱ. 입안예고

8.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입안 이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되, 그 인하폭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LPG 부탄	ㅇ 세율: 247.5원 → 206원/kg

Ⅱ. 입안예고

9.「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서

(1) 입안 이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방식을 개선하며,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활성화를 위한 수출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의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 승인 제한기간 완화 (제 32 조)	○ 정액환급률표 적용·비적용 변경 제한기간 완화 · 비적용 → 적용 변경 제한기간: 2 년 → 1 년 단축 · 적용 → 비적용 변경 제한기간(2 년): 삭제
환급 제증명서류 자율발급 제도 도입 (제 57 조 내지 제 59 조)	○ 세관장이 지정한 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또는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물품공급자 등이 평균세액증명서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 ※ '26.7.1. 자율발급 신청분부터 시행, 종전 P/L 발급업체(관세사)에 대한 경과규정 마련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방식 개선(제 112 조)	○ 수출기업이 환급신청 건별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건별 방식이 아닌 1 회계연도(일정기간별) 소요량 산정방법에 따른 부산물 공제비율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소요량 사전심사 결정물품에 대한 관세조사 완화규정 신설 (제 122 조의 2)	○ 소요량 사전심사 결정 업체(물품)에 대한 관세조사 시 환급 부문 중 '소요량 및 소요량 계산방법 적정여부' 점검 간소화 근거 마련

Ⅲ. 조세심판사례

1. 쟁점물품(계전기)의 품목분류 관련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2020.03.09.부터 2024.06.20.까지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 물품을 수입신고(총 650 건)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HSK 제 8536.41-0000 호, 관세율은 한-OOO FTA 에 따른 관세율(0~3.2%) 및 RCEP 에 따른 관세율(6.4~7.5%)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8.22. 및 2024.12.12. 청구법인의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한 자율점검 결과, 쟁점물품은 접점전압(출력값)이 60 볼트를 초과하므로, '전압이 60 볼트 이하인 계전기'가 분류되는 제 8536.41-0000 호가 아닌 '기타의 계전기'로 보아 HSK 제 8536.49-0000 호로 판단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일정 금액의 관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정요지: 기각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쟁점물품과 동일한 사양의 계전기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 받았음에도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사전심사 받은 바 없고 세관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통지서상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3) 결정일

2026.04.07 (조심2025관0061)

Ⅲ. 조세심판사례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대상 원유가격을 산정하면서 운임 등을 안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쟁점기간동안 쟁점수출자 A 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사단법인 B 의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에 따라 물량을 신청하고 추천받아 할당관세율 0.5%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건 추천요령에 따른 물량 계산 시 이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추천받은 것을 확인하고, 과다하게 산정되어 할당관세율(0.5%)을 적용받은 쟁점물품에 대해 기본관세율 3%를 적용하여, 2022.9.19. 청구법인에게 관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수입신고 총 4 건에 대해 해당 관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 총 48 건에 대한 관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가산세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원은 각하 결정을 하였다.

마. 이후, 광주세관장은 여수세관장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쟁점물품의 할당관세 추천물량 과세가격 산정 시 운임, 보험료, 가산금액에 대하여 란별 중량에 의한 안분을 하지 않아 세액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누락된 세액에 대한 처분 요구를 하였다.

바. 이에 처분청은 수입신고 총 20 건에 대한 관세를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정요지: 기각

관련 추천요령상 할당관세 추천대상 원유 산정시 정유이체 주·부산물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투입 원료별로 산출되는 정유이체 주·부산물의 정확한 중량을 계산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은 관계기관 등에 질의하지 아니한채 자의적으로 방향족 원료에서 발생한 주·부산물은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3) 결정일

2026.03.26(조심2025관0083)

Ⅲ. 조세심판사례

3. 쟁점물품(적층 베니어 목재)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HSK 제 4412.39-9000 호의 합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원목 및 건축 관련 목제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수출자 A, B 및 C, D 로부터 생산된 목재 총 59 건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이 합판(Plywood)에 해당하지 않고, 양쪽 외면의 플라이가 침엽수 목재이며, 각 플라이가 6 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보아 HSK 제 4412.99-6991 호 또는 제 4412.99-9910 호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물품이 관련된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HSK 제 4412.39-9000 호의 합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통지하려는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총 7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를 경정. 고지하였고, 같은 날 총 51 건에 대한 관세를 과세전통지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채택되지 않음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신고 51 건에 대한 관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결정요지: 취소

이 건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정상 HS 제 4412.4-호의 LVL 은 생산지에 불과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HS 해설서 소호 제 4412.4-호 및 산업표준심의회 내용상 적층된 단판 중에 직교단판이 약간 삽입된 경우에도 LVL 에 포함되는 등 쟁점물품은 합판보다 LVL 의 물리적 특성에 근접하고 쟁점물품의 직교비율과 외국의 공업규격 및 분류사례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HS 제 4412.4-호에 해당함

(3) 결정일

2026.03.31 (조심2025관0097)

4. 청구인이 국내판매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면서 자가사용목적의 소액물품으로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주요내용

가. 청구인은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총 208 건의 건강기능 식품 등을 해외에서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청구인 및 제 3 자 명의로 수입하면서 마치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물품으로 감면 신청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하여, 청구인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한 후, 청구인에게 총 196 건에 대해 관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정요지: 기각

과세절차와 형사절차는 그 목적과 절차가 상이하여 처분청이 부족세액에 대해 적정한 과세절차를 진행한 것은 형사소송절차와 무관한 적법한 처분이고, 쟁점물품의 구매 횟수, 수량 및 복용법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자가사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시 관세법에 규정된 절차 등을 이행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3) 결정일

2026.03.27 (조심2025관0099)

Ⅳ.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 美 백악관, 의약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발표

- 한국산 의약품은 15% 관세 적용, 제네릭의약품·바이오시밀러는 면제 –

美 백악관은 4.2일(목)(美 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의약품 및 원료(pharmaceuticals and their ingredients)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하였다.

특허 의약품 및 원료(patented pharmaceutical products and ingredients)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며, 미 포고령에 명시된 특정 대기업에 대해서는 120일 이후인 7.31일부터, 그 외에 대해서는 180일 이후인 9.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 등 미국과의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적용하고, 영국산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업이 미 정부와 가격 및 미국내 생산협정 체결시 관세를 경감하는 예외규정도 발표하였다. 기업이 美 보건복지부와 가격협정 체결 및 美 상무부와 미국내 생산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2029년 1월 20일까지 무관세를 적용하고, 美 상무부와 미국내 생산 협정만 체결시에는 20%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제네릭의약품, 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generic pharmaceutical products, biosimilars, and associated ingredients)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1년후 재검토할 예정이며, 희귀질환 치료제, 동물용 의약품 등 특수 의약품은 무역합의국에서 생산 또는 긴급한 공중 보건상 필요를 충족하는 경우 면제하기로 하였다.

우리 정부는 그간 미측에 의견서 제출('25.5.4), 의약품 수출업계 간담회 개최('25.9.29) 등 국내 산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으며, 지난해 한미 관세합의('25.11.14)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232조 관세가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의약품 232조 관세조치는 한미간 관세합의에 따라 15%로 부과됨으로써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적용되었으며, 우리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1년간 관세 미적용으로 단기적인 수출 영향은 제한적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정부는 미 관세 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무역법 301조 등 미측 후속 관세조치에 대해서도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 원칙하에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Ⅳ. 관세 및 FTA관련 동향

2. 미국의 철강 232조 관세 개편, 기업 행정부담은 완화되고 업종별 영향은 상이

- 관세 산정방식 간소화로 중소·중견기업의 행정부담 완화
- 한미 FTA 체결로 경쟁국 대비 유리한 측면도 존재
- 화장품, 식품 등 일부 품목은 232조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담 완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동부표준시 4월 6일 00:01시 시행 예정인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232조 관세 부과 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기업의 행정 부담은 완화되는 한편 실제 영향은 품목 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과세 기준을 제품 내 철강 등의 함량 가치에서 통관 가격으로 변경되면서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수가 기존보다 약 17%(23억불 규모) 감소한 바, 우리측의 관세 부담이 상당 부분 낮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WTO 최혜국대우(MFN) 관세 또는 FTA 특혜관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232조 관세의 특성상, 한미 FTA 기준을 충족할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경쟁국 대비 유리한 측면도 존재한다. 기존 함량가치 기준에 따르면 같은 품목이더라도 기업에 따라 관세가 달랐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웠으나, 통관가격(full customs value)의 50%/25%/15% 정률 관세로 일원화되면서 한국산 제품이 유리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적용되는 한미 FTA 세율은 0%이다.

한편, 품목별 영향은 상이하다. 화장품, 식품 등은 파생상품에서 제외됨에 따라 글로벌 관세 10%만 적용된다. 또한,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이라 하더라도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전체의 15% 미만일 경우에는 232조 관세가 면제된다. 마찬가지로 주력 수출품목인 초고압 변압기 및 일부 공작기계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25%에서 15%로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어, 해당기간 동안에는 관세 부담이 이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다수 품목이 이미 자동차 232조 적용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의 경우는 금번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개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품목의 경우 기존 30% 이상 관세를 적용받았으나 25% 단일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다소 유리해지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자동차 232조와 철강·알루미늄 232조에 동시 해당될 경우, 자동차 232조 관세(15%)만 적용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은 기존 대비 관세율 변동이 없어 영향이 제한적이며, 우리 주력 대미 수출 품목인 세탁기는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 변경된 제도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일부 기계 및 가전 등은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불리해진 품목이 일부 존재하나, 유리해진 품목도 있어 영향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관세 외에도 행정부담 완화와 불확실성 해소와 같은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정부는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에도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Ⅳ. 관세 및 FTA관련 동향

3. 중국산 아연 표면처리 냉연제품에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의결

- 무역위, 22.34~33.67%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재경부 건의
-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 덤핑조사도 개시하기로
-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등 2건에 대한 공청회도 개최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4월 16일(목), 제472차 무역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 덤핑사건」에 대해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가 있는 것으로 예비 긍정 판정하고, 본조사 기간 중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의 공급자별로 22.34~33.6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다. 그간 무역위원회는 동국CM, KG스틸 및 세아CM으로부터 덤핑조사 신청('25.11월)을 접수한 이후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답변서 검토 및 이해관계인 회의 등을 통해 덤핑사실 여부와 국내산업피해 여부를 조사해왔다.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은 아연 및 아연합금으로 표면처리한 두께 4.75mm 미만의 냉간압연 제품으로, 건축자재(지붕·외장·구조재 등),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가구, 금속제품, 배관 및 강관 등 산업 전반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품목이다.

금번 의결은 잠정조치에 대한 것으로 향후 본조사 기간 동안 현지실사, 공청회 및 추가 자료조사 등을 거쳐 9월경에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무역위는 이날 산업부 무역조사실로부터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 덤핑조사 개시를 보고받았다. 무역조사실은 조사신청 자격 및 대표성 충족여부,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검토 결과 덤핑조사 개시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같은 날 무역위는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국내산업 피해조사」와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국내산업피해조사」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8항에 근거하여 최종판정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이번 공청회에는 각 안건별로 신청인측과 피신청인측 이해관계인 등 20여 명씩 참석하였다. 두 사건은 각각 6월과 7월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Ⅳ. 관세 및 FTA관련 동향

4. 미,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 부과방식 변경

- 수출물품의 품목관세 부과대상 여부와 변경된 관세율을 재확인해야
- 관세청, 변경된 품목에 대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예정

미국 정부는 현지 시각 4월 2일(목) 백악관 누리집을 통해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대통령 포고문 및 팩트시트(Fact Sheet)를 통해 발표하였다. 변경 사항은 현지시각 4월 6일(월) 0시 통관분부터 적용된다.

첫째,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 및 파생제품의 전체 가격에 대해 25% 또는 50% 품목관세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의 함량가치과 비함량 가치를 구분하여 함량 부분에는 품목관세 50%, 비함량 부분에는 임시수입 추가관세 10%를 각각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건별로 철강·알루미늄·구리의 함량가치와 비함량가치를 산정하여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신고해 온 대미 수출기업은 산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부속서를 통해 품목관세 부과 및 제외 대상 품목을 미국 품목번호(HTS) 기준으로 새로이 공지하였다. 예를 들어 냉장고, 에어컨, 변압기 등은 철강, 알루미늄, 구리의 함량가치를 구분할 필요 없이 25% 관세가 부과되며, 화장품, 향수, 소화기 등은 철강 품목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셋째, 물품에 포함된 철강, 알루미늄, 구리 및 그 파생제품의 총 중량이 물품 전체 중량의 15% 미만인 경우 품목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중량을 계산할 때 철강제 볼트, 베어링, 전동축 등 미국 품목번호(HTS) 기준으로 공고된 모든 관련 품목의 중량을 포함하여 면밀하게 계산하고 판정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 품목관세 변경 내용>

구분	품목 예시	세율(%)		비고
		변경전	변경후	
거의 전적으로 철강, 알루미늄, 구리로 만들어진 제품	스테인리스 강, 알루미늄 시트, 구리 판 등	50	**50**	-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제품	냉장고, 에어컨, 변압기 등	함량과세*	**25**	① 화장품, 향수, 소화기 등은 품목관세 제외 ② 철강·알루미늄·구리 비중이 물품 전체 중량의 15% 미만인 경우 품목관세 제외 ⇒ **①, ②의 경우 임시수입추가관세 10%만 부과**

* 철강, 알루미늄, 구리 함량 부분은 품목관세 50%, 비함량 부분은 임시수입추가관세 10% 부과

이번 조치로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 부과방식이 대폭 변경됨에 따라, 수출기업은 공고 내용*을 확인하여 부과 대상 여부와 정확한 미국 관세율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6/04/strengthening-actions-taken-to-adjust-imports-of-aluminum-steel-and-copper-into-the-united-states/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 공고 변경 내용을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공고된 품목 전반에 대해 한-미 품목분류 연계표를 작성하여 4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